

정 관

사단법인 대한웅변인협회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웅변·스피치의 연구와 보급을 통하여 웅변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 건전한 국가관 확립과 애국정신 선양을 위한 계몽에 기여함으로써 사회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대한웅변인협회”라 한다.

영문으로는 ‘Korean Orators Association’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업)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 사업을 시행한다.

1. 웅변스피치 연구 보급 및 편찬사업
2. 계몽 및 각종 웅변스피치대회의 개최
3. 인재육성을 위한 연수지원사업
4. 시민의식 함양사업
5. 다문화가족 소통지원 사업 및 교류 협력사업

제5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 ① 이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 2 장 회 원

제6조(회원자격)

- ① 이 법인의 회원은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1. 정회원: 이 법인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한다.
 2. 특별회원: 이 법인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고, 적극 후원할 개인, 단체, 연구기관, 외국인, 외국연구기관 등으로 한다.
- ② 회원의 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별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 ②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4. 회원으로서 명예와 품위 유지

제8조(회원의 탈퇴)

- ①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납부한 회비, 기부금 등 이 법인의 재산은 회원 탈퇴로 인하여 환급되지 않는다.

제9조(회원의 제명)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위신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 의결로써 이사장이 제명 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이사 5인(이사장 1인 포함)

감사 2인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의 임원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임기 만료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임한다.

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제13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총회에서 선출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는 사항을 처리한다.

제14조(임원 선임의 제한))

①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①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15조(이사장 직무대행자의 지명)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을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결위 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을 대행 한다.

③ 제2항의 지명을 위한 이사회는 이사정원의 과반수의 이사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 직무대행자를 지명 한다.

16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안의 재산상황을 감독하는 일

2. 이사회 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 의 소집을 요구 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 날인 하는 일

제 4 장 총 회

제17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주요사항

제18조(총회의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12월 중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각 회원에게 우편,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 사회관계망 메시지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총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19조(총회의 의결정족수)

-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총회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 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1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이 사 회

제22조(이사회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는 사항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중요 사항

제 23조(의결정족수)

-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최하지 못한다.
- ② 이사회 의사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③ 이사회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24조(이사회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장의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회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우편 또는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 사회관계망 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이사회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 2항의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6조(서면 의결금지) 이사회 의사 서면 의결에 의할 수 없다.

제 6 장 재산 및 회계

제27조(재산의 구분)

- ①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거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 잉여금중 적립금
-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2와 같다.

제28조(재산의 관리)

- ① 제27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9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을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30조(경비의 조달방법)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 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31조(회계의 구분)

-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처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처리한다.
-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분배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32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근거하여 처리하며, 공익법인 회계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제33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4조(예산외의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35조(임원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6조(세입세출 예산) 이 법인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 7 장 보 칙

제37조(기부금 공개) 이 법인은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38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9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귀속한다.

제40조(정관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변경사유서 1부
2. 신청관 1부
3. 신·구대비표 1부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5. 정관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기타 주무관청에서 허가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

제41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2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주 소	임 기
이사장	편부범	서울시 노원구 중계3동 515-2 건영 2차APT 101/405	4년
이 사	송양호	서울시 강남구 대치1동 670 주공고층 APT 305/301	4년
이 사	이석성	서울시 강동구 길동 400 길동 우성APT 105/805	4년
이 사	한관우	충남 홍성군 홍북면 석택리 666-2호	2년
이 사	배선모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34-41	2년
감 사	김기장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180-1	2년
감 사	송승철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73 신반포2지구 APT 11/109	1년

부 칙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2020년 12월 27일 개정: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292-130 소림빌딩 2층에 둔다.→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